

1. 개정이유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근거의 마련, 피해자 구제 및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체육인보호 시책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931호, 2020. 2. 4.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임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일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 가. 기존 규정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별승인을 통해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호 신설)
- 나. 연수태도, 지도 및 현장 실습 평가 등을 통과한 경우에 해당 연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안제13조제2항)
- 다. 연수기관의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정하도록 개정(안제15조제3항)
- 라. 문체부 장관이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3조제3항)
- 마. 법 제18조의6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 내용 마련(안제29조의2)
- 바. 법 제18조의8에 따라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 마련(안제29조의3)

사.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별표 4) 개정 및 별지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관계부처 합의 예정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 ~ 6. .)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해당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법 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의 자격 중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스포츠지도자 자격 종류를 보유한 사람”으로, 제2호 중 “해당 종목에 대한 지도경력”을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과 관련된 재직 경력”으로, 제3호 중 “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에 관한”을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에 관한”으로, “지도경력”을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의 지도경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위원을 구하지 못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의제2항 중 “참여한 경우”를 “참여하고, 연수태도, 지도 및 현장실습 평가 등을 통과한 경우”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연수기관의 부원장이 되며”를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하며”로 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 인권, 성폭력 및 폭력의 정의 및 유형
2. 스포츠 인권 및 성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법령(규정)·제도 및 제재조치
3. 스포츠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4. 스포츠 성폭력 등 폭력 주요 사례 및 처리 결과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을 통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신규로 해당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되게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

2.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
3.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에서 지도하는 지도자
4.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5.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 중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 임·직원
6.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의 임·직원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9조의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사용하려는 체육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징계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화된 업무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8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단, 자료의 제공방법의 경우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면 그 자료를 제공한 체육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체육단체 등은 징계정보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체육단체 등은 채용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기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⑦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⑧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징계 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6항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기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징계 관련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5호의2 내지 7의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12호의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시험위원의 자격) ①·② (생략)	제9조(시험위원의 자격) ①·② (현행과 같음)
1. <u>해당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u> 으로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 <u>법 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의 자격 중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스포츠지도자 자격 종류를 보유한 사람</u> 으로서 -----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u>해당 종목에 대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u>	2. ----- ----- 사람으로서 <u>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과 관련된 재직 경력</u> 이-----
3. <u>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u> 으로서 <u>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u>	3. <u>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에 관한 전문성</u> ----- ----- 사람으로서 <u>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u>
<u><신 설></u>	4. <u>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위원을 구하지 못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연수과정의 이수) ① (생 략)	제13조(연수과정의 이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 연수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u>참여한</u> 경우에는 해당 연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 이상을 <u>참여하고</u> , 연수태도, 지도 및 현장실습 평가 등을 통과한 경우에는 해당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연수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연수기관의 부원장이 되며</u> ,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 부위원장은 <u>위원 중에서 호선</u> 으로 하며, 위원은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② (생 략)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u><신 설></u>	제29조의2(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 인권, 성폭력 및 폭력의 정의 및 유형 2. 스포츠 인권 및 성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법령(규정)·제도 및 제재조치 3. 스포츠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4. 스포츠 성폭력 등 폭력 주요 사례 및 처리 결과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을 통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신규로 해당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되게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신 설>

따른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

2.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

3.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에서 지도하는 지도자

4.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5.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 중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 임·직원

6.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의 임·직원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제29조의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사용하려는 체육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징계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화된 업무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8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단, 자료의 제공방법의 경우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면 그 자료를 제공한 체육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체육단체 등은 징계정보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체육단체 등은 채용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등을 위해 필요
한 경우 경기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선수, 체육지
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
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6
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징
계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⑧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징계 관
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6항
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
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기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선
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에게 징계 관련 증명서를 교부
할 수 있다.

<신 설>

⑩ 그 밖에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
행한다.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 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무거운 처분 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 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려 처분할 수 있되,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처분 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하고, 가중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일 내에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격취소처분을 한다.

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자격취소 및 정지 요청이 있을 경우 제2호에 따른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1호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2호	자격취소		
다.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3호	자격취소		
라. 법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4호	자격취소		
마.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5호			
1)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로,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자격취소를 요청한 경우		자격취소		
2)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8개월	자격정지 1년
3)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자격정지를 요청한 경우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8개월
바.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6호			
1)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스포츠		자격취소		

윤리센터에서 자격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3)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법 제18조의4 제3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자격정지를 요청한 경우	<u>1년</u> 자격정지	<u>1년</u> 자격정지	<u>1년</u> 자격정지
사. 체육지도자의 직무수행 중 부정이	<u>1년</u>	<u>1년</u>	<u>1년</u>
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1) 다음 각목의 사유로 법 제18조의4 제3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자격취소를 요청한 경우	자격취소		
가) 체육관련 입시 비리			
나)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다) 욕설 폭언 강요 등 선수 기본권 침해			
라) 단체 및 대회 운영 관련 금품 비위 및 횡령, 배임			
마)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가 있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사유로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가) 체육관련 입시 비리	<u>6개월</u>	<u>8개월</u>	<u>1년</u>
나)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다) 욕설 폭언 강요 등 선수 기본권 침해			
라) 단체 및 대회 운영 관련 금품 비위 및 횡령, 배임			
마)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가 있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사유로 법 제18조의4 제3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자격정지를 요청한 경우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가) 체육관련 입시 비리	<u>4개월</u>	<u>6개월</u>	<u>8개월</u>
나)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다) 욕설 폭언 강요 등 선수 기본권 침해			
라) 단체 및 대회 운영 관련 금품 비위 및 횡령, 배임			
마)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가 있는 경우			
4) 법 제18조의6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u>2개월</u>	<u>4개월</u>	<u>6개월</u>

제 호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성 명 :	사진 (3cm×4cm)
생년월일 :	
자격등급 :	
자격종목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발 급 일 :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Title	
The Certification of Professional Sports Instructor	
Name:	Photo (3cm×4cm)
Date of Birth:	
Grade of Qualification:	
Item of Qualification:	
Giv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Paragraph 2 & 3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Article 18, Paragraph 3, Sub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we certify that the recipient is eligible to be a Professional Sports Instructor as described above.	
Date of Acquiring Qualification: Day Month Year Date of Issue: Day Month Year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eal	

210mm×297mm[White Paper 80g/㎡(Recyclable Material)]

제 호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성 명 :	사진 (3cm×4cm)
생년월일 :	
자격등급 :	
자격종목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발 급 일 :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Title	
The Certification of Life Sports Instructor	
Name:	Photo (3cm×4cm)
Date of Birth:	
Grade of Qualification:	
Item of Qualification:	
Giv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Paragraph 4 & 5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Article 18, Paragraph 3, Sub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we certify that the recipient is eligible to be a Life Sports Instructor as described above.	
Date of Acquiring Qualification: Day Month Year Date of Issue: Day Month Year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eal	

제 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성 명 :

생년월일 :

사진
(3cm×4cm)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발 급 일 :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Title

The Certification of Health Exercise Manager

Name:

Date of Birth:

Photo
(3cm×4cm)

Giv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Paragraph 2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Article 18, Paragraph 3, Subparagraph 3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we certify that the recipient is eligible to be a Health Exercise Manager as described above.

Date of Acquiring Qualification: Day Month Year
Date of Issue: Day Month Year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eal

제 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성 명 :	사진 (3cm×4cm)
생년월일 :	
자격등급 :	
자격종목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 및 제1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발 급 일 :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Title	
The Certification of Sports Instructor for the Disabled	
Name:	Photo (3cm×4cm)
Date of Birth:	
Grade of Qualification:	
Item of Qualification:	
Giv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Paragraph 3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Article 18, Paragraph 3, Subparagraph 4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we certify that the recipient is eligible to be a Sports Instructor for the Disabled as described above.	
Date of Acquiring Qualification: Day Month Year Date of Issue: Day Month Year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eal	

제 호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성 명 :	사진 (3cm×4cm)
생년월일 :	
자격종목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4 및 제18조제3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발 급 일 :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Title	
The Certification of Sports Instructor for the Youth	
Name:	Photo (3cm×4cm)
Date of Birth:	
Item of Qualification:	
Giv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Paragraph 4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Article 18, Paragraph 3, Subparagraph 5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we certify that the recipient is eligible to be a Sports Instructor for the Youth as described above.	
Date of Acquiring Qualification: Day Month Year Date of Issue: Day Month Year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eal	

제 호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성 명 :	사진 (3cm×4cm)
생년월일 :	
자격종목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의5 및 제18조제3항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발 급 일 :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Title	
The Certification of Sports Instructor for the Elderly	
Name:	Photo (3cm×4cm)
Date of Birth:	
Item of Qualification:	
Giv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Paragraph 5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Article 18, Paragraph 3, Subparagraph 6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we certify that the recipient is eligible to be a Sports Instructor for the Elderly as described above.	
Date of Acquiring Qualification: Day Month Year Date of Issue: Day Month Year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eal	

210mm×297mm[White Paper 80g/㎡(Recyclable Material)]

